

2023. 4. 28.(금)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충 주 시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차 례

【 조례안 】 ☞ 원안가결 (3), 수정가결 (2)

<원안>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정>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원안>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원안>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수정>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499호
- 나. 제 안 자 : 충주시장(자치행정과장)
- 다. 제출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마. 상정일자 : 2023년 04월 20일
- 바. 의결일자 : 2023년 04월 20일
 -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차. 의결결과 :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8조제1항, 제19조제3항)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비율 확대(안 제10조제1항)
- ‘지도·감독’ 규정 일부 삭제(안 제20조제4항)
-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 위탁취소 사유 구체화(안 제23조제1항)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사무위탁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였음.
- 그 결과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과 선정기준 및 배점공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이해 관계자 참여 배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위탁사업의 사후관리·감독 차원에서 수탁자의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 주기적 감사 등을 통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사항 발견 시 관계가 신분상 조치 등의 규정을 자치법규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검정·관리 등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하며, 충주시에서는 78개의 시설(사무) 등을 민간위탁 운영¹⁾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준비(선정)→수행→사후관리’가 엄격·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공무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해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 하였고

1) 2020. 10. 기준(충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편람)

- 안 제20조의2는 위탁 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와 관계자 문책 규정 신설, 안 제23조는 감사결과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사업과 관련한 제재 사항을 추가해 책임성 있는 위탁 사무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위와 같이 개정 조례안이 위탁 사무의 공정·책임·투명성을 강화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④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⑤ 심사결과 :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 없음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500호
- 나. 제안자 : 충주시장(기획예산과장)
- 다. 제출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마. 상정일자 : 2023년 04월 20일
- 바. 의결일자 : 2023년 04월 20일
 -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마. 의결결과 : **수정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충주시에서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 관리·운영 시설을 정비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시설 추가(안 별표)
 -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유소년 축구장, 탄금호 물놀이장, 화물차공영차고지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유소년 축구장,

탄금호 물놀이장,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시설의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안전으로 제출된 사항임.

-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은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나뉘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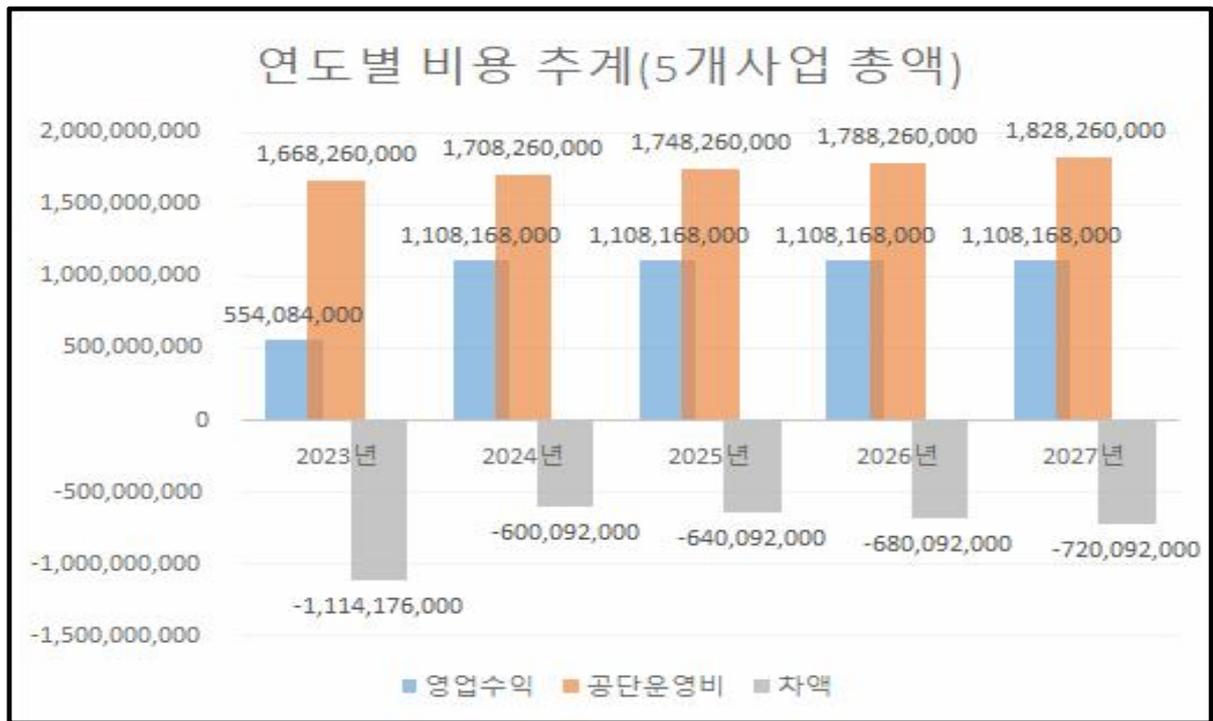
사업 영역	세부 사업	적용기준	적용유무	
			당연 적용	임의적용
당연 적용 사업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1일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	적용기준에 미달하지만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적용가능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	
	궤도사업(도시궤도사업 포함)	보유차량 50량 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보류차량 30대 이상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이상	√	
	하수도사업	1일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	
	주택사업	주택관리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 의 관리 등의 수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 시설(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 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 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문화 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 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임의 적용 사업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 로 충당할 수 있으면 적용 가능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 개정조례안에 추가된 5개 사업의 지방공기업 사업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유소년 축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공공복지시설(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2조제2항제4호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임의적용사업)은 아니라 할 것임²⁾
- 탄금호 물놀이장의 경우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의 위치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해야하는 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함.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제2조제1항제9호의 공공복지시설에 해당함.
- 위와 같이 개정 조례안에 따라 추가되는 5개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해당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체육시설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생활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법제처 회신-17-0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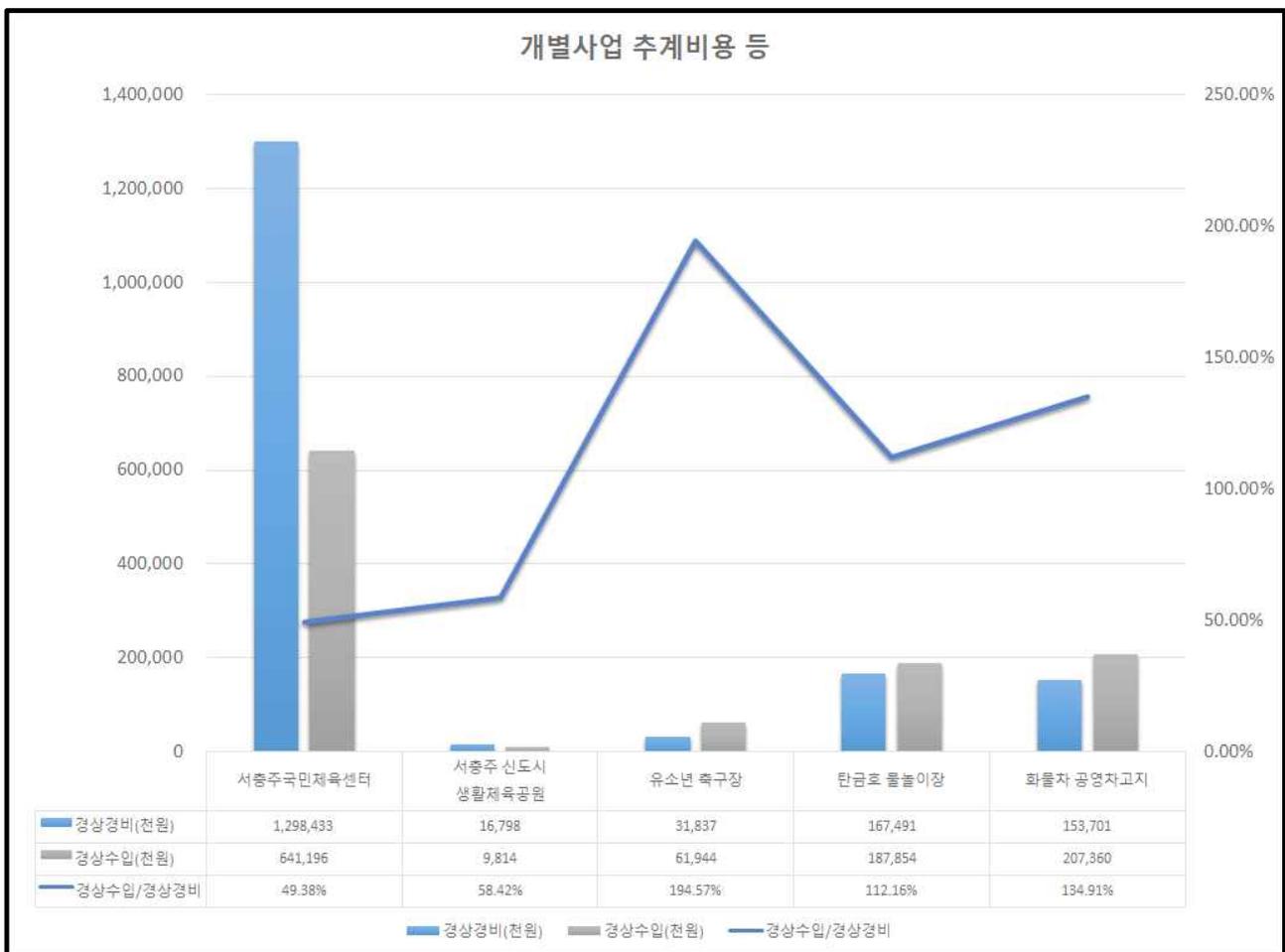
- 다음으로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으로,
- 23년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유소년 축구장 체육시설, 탄금호 물놀이장, 화물차공영차고지의 23년도 총 경상경비는 1,668,260천원, 총 영업수익은 554,084천원, 24년 총 경상경비 1,708,260천원, 총 영업수익은 1,108,168천원 등으로 5개년 비용추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은 개별 사업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³⁾,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가지 유형)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경상경비 및 경상수입은 그 각 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법제처-13-0435)

- 임의적용사업에 해당하는 탄금호 물놀이장은 경상수입과 경상경비의 비가 112.16%로 임의적용 기준을 충족함.
- 서충주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경상수입과 경상경비의 비가 49.38%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의 기업성 조건에 미달함.



- 개정 조례안에 포함 된 5개 사업은 각각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별조례를 따름.

- 개정조례와 개별 조례와의 상충 여부를 살펴보면,
-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체육 시설은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고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므로 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가 상충하지 않음.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탄금호 물놀이장 운영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개정조례안과 상충하지 않음.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경우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데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은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개정 절차가 필요함.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 결과,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의 경제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 사업의 타당성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울 것,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환경훼손이 없어야 하는 등 공공성과 관련한 전제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한다는 기업성 조건을 충족⁴⁾해야 함.
-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위탁 사업’으로,
- 민간위탁 위탁사업과는 다르게 최초 위탁과 재위탁 시 별도의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조례 개정만으로 위탁에 대한 동의 효과가 있으므로 각 개별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함.

④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⑤ 심사결과 : 수정가결

⑥ 첨부서류

-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4)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행안부, 2021. 03. 23.)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3500-1
----------	--------

제출일자 : 2023. 4. 28.

제 출 자 :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설관리공단 각 개별 위·수탁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하여 공공위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공단 위탁사업을 삭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유소년 축구장, 화물차공영차고지 삭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신·구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시설 (제19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암1체육관 2. 호암2체육관 3. 국민체육센터 4.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5.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6.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7. 유소년 축구장 8. 탄금호 물놀이장 9. 호암예술관 10. 하늘나라(봉안당 포함) 11. 봉황휴양림 12. 계명산휴양림 13. 행복숲체험원(문성휴양림) 14. 목계 솔밭캠핑장 15.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 16. 충주천1주차장 17. 충주천2주차장 18. 금릉주차장 19. 칠금주차장 20. 연수제1주차장 21. 연수제2주차장 22. 화물차공영차고지 23. 클린에너지파크(환경체육센터 포함) 24. 종량제봉투판매 </div>	<p>[별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시설 (제19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암1체육관 2. 호암2체육관 3. 국민체육센터 4.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5.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6. 탄금호 물놀이장 7. 호암예술관 8. 하늘나라(봉안당 포함) 9. 봉황휴양림 10. 계명산휴양림 11. 행복숲체험원(문성휴양림) 12. 목계 솔밭캠핑장 13.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 14. 충주천1주차장 15. 충주천2주차장 16. 금릉주차장 17. 칠금주차장 18. 연수제1주차장 19. 연수제2주차장 20. 클린에너지파크(환경체육센터 포함) 21. 종량제봉투판매 </div>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501호
- 나. 제 안 자 : 충주시장(기획예산과장)
- 다. 제출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마. 상정일자 : 2023년 04월 20일
- 바. 의결일자 : 2023년 04월 20일
 -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사. 의결결과 : 원안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출산가정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육아수당 및 다태아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인구정책 공모 등(안 제11조)
- 지원사업 등(안 제13조)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안 제14조)
-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수당지원 등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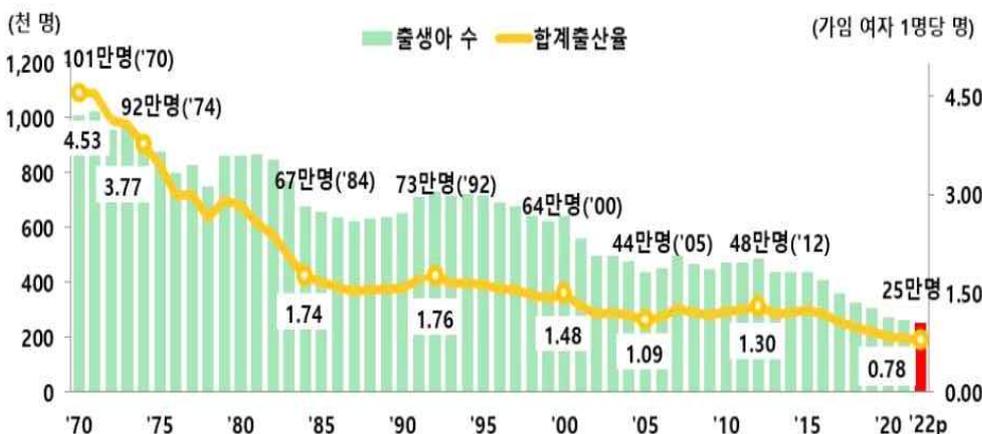
- 안 제13조에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충청북도 출산육아 수당지원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지원 지침의 지원금액은 1,000만원임.
- 안 제4조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학교 등에게 행정·재정적(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충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위촉직 위원을 규정한 안 제7조제4항제1호의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의 규정과 관련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부칙 안 제2조는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산후관리비가 포함된 개념인 관계로 중복지원을 없애기 위해 산후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충주시 산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칙 제4조 또한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따라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규정에서 출산장려금 개념이 포함되고, 개정 조례에 다태아 축하금 지원이 포함돼 현행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 상위법 저촉여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지자체의 책무에 부합함.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적합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따라 지자체장이 권한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 보조금 지급근거를 규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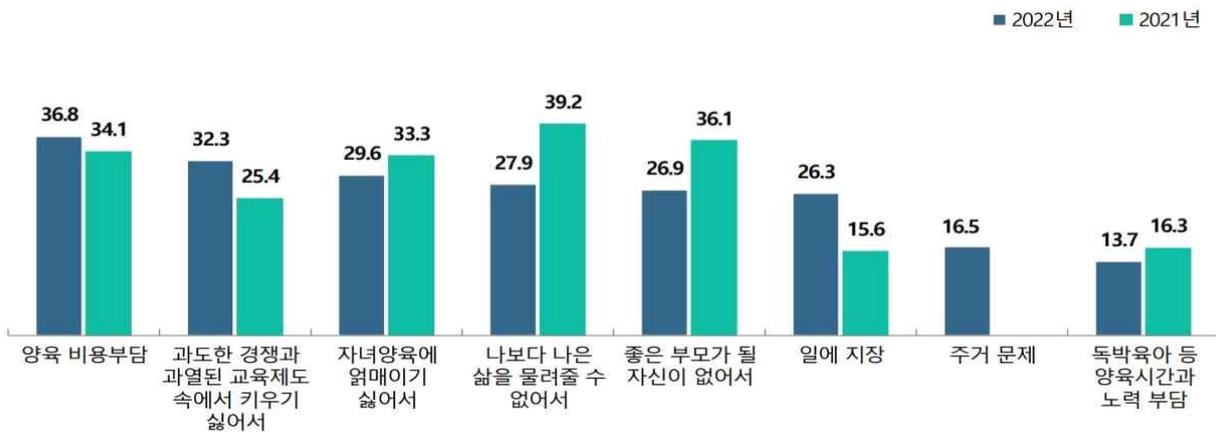
-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잠정)은 0.78이며, 관내 합계출산율은 0.9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존재함.



충청북도	7.5
청주시	4.7
청주시 상당구	1.0
청주시 서원구	0.9
청주시 흥덕구	1.6
청주시 청원구	1.2
충주시	0.9
제천시	0.5
보은군	0.1
옥천군	0.1
영동군	0.1
진천군	0.5
괴산군	0.1
음성군	0.3
단양군	0.1
증평군	0.2

5) 통계청 보도자료(2023. 2. 22.)

- 특히, 관내 시민들에게 자녀를 낳은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⁶⁾ 1위는 36.8%가 응답(복수)한 양육 비용부담으로,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에 따라 출산가정에 연차별로 총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사업이 출산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개정안 제10조에 명시된 결혼, 임신, 양육,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발굴 필요성이 존재함.

④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⑤ 심사결과 :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 없음

6) 2022년 충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502호
- 나. 제 안 자 : 충주시장(관광과장)
- 다. 제출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마. 상정일자 : 2023년 04월 20일
- 바. 의결일자 : 2023년 04월 20일
 -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차. 의결결과 : 원안가결

① 제안설명 요지

- ‘23.1월부터 ‘세계무술공원’의 명칭이 ‘탄금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명시 되어있는 기존 명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조례 내용 중 ‘세계무술공원’의 표기를 ‘탄금공원’으로 변경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세계무술공원’의 명칭이 ‘탄금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세계무술공원 명칭을 정비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음향시설 등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도 특이사항이 없음.

④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⑤ 심사결과 : 원안가결

⑥ 첨부서류 : 없음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

- 가. 의안번호 : 제3503호
- 나. 제 안 자 : 충주시장(관광과장)
- 다. 제출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04월 11일
- 마. 상정일자 : 2023년 04월 20일
- 바. 의결일자 : 2023년 04월 20일
 -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바. 의결결과 : **수정가결**

1] 제안설명 요지

- 탄금호 피크닉공원 조성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과 체험관광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부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탄금호 피크닉공원 운영 및 사용료 등 관련 규정 신설
- 체험관광센터 감성시티투어 사용료 및 감면 등 관련 규정 일부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탄금호 캠핑장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라 해당 부지에 탄금호

피크닉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피크닉 공원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체험관광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의 탄금호 피크닉 공원을 위탁 대상사업으로 신설하여 관리위탁의 근거를 만들었고,
- 안 제15조의 반액감면 대상에 체험관광센터 주관 프로그램을 신설,
-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탄금호 피크닉 공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별표3 감성시티투어 일반사용료와 감면사항을 추가하였고,
-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희망실 6인실, 8인실이 게스트하우스에 존재하지 않아 삭제하였음.

○ 상위법 저촉여부

- 안 제8조의 탄금호 피크닉 공원을 위탁 대상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피크닉 공원 운영이 단순 시설 관리 등의 업무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위배 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관광지의 이용료 등에 대한 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탄금호 피크닉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탄금호 피크닉 공원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감면사항 등의 운영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사용료 관련 신설 규정인 안 제15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과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탄금호 피크닉 공원 사용료 전액감면 사항을 규정한 안 제28조제2항 제1호 가목과 나목, 그리고 안 별표 4와 관련으로 일부감경 사항을 규정한 제2호의 나목부터 라목의 괄호 부분 내용의 필요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으로는,

- 탄금호 피크닉 공원의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광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 체험관광센터 프로그램의 사용료 반액 감면과 충주역과 시외 버스터미널 이용자의 감성시티투어 사용료를 반액 감면 하는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기타 개정부분은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어법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④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⑤ 심사결과 : 수정가결

⑥ 첨부서류

-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3503-1
----------	--------

제출일자 : 2023. 4. 28.

제 출 자 :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탄금호 피크닉 공원 감면 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탄금호 피크닉 공원 감면 대상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28조제2항제2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나목 중 “가족(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을 “가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상자가족(1급 또는 2급 의사상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을 “의상자가족”으로 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8조(사용료 및 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별표 4에 따른 일부 감경 가. (생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1급부터 3급까지의	제28조(사용료 및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1. (개정안과 같음) 2. ----- 가. (개정안과 같음) 나. ----- ----- ----- 가족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
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
다)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
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
다)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
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
자가족(1급 또는 2급 의사
상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
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생략)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

----- 의상
자가족

마. (개정안과 같음)